

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11.2		16		
2	2020.5.29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학사구조개편에 관한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우리대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우리대학 학칙 제2조 및 별표1에 규정된 학사과정 설치 학과(부)에 적용한다.

제3조 (원칙) 학사구조개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의한다.

1. 우리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적 구현을 위한 조치
2. 대학교육과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
3. 대학발전계획에 의한 정책 수행

제4조 (운영기구) ①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'미래전략위원회' 에서 관장한다.

② 미래전략위원회는 학사구조개편 세부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부(과)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TFT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5조 (평가기준) 학사구조개편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다.

1. 학부(과) 평가결과
2. 교육수요자 선택요인(입학경쟁률, 중도탈락률 등)
3. 대학 발전계획 및 특성화 요인

제6조 (절차) ① 학사구조개편에 관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학사구조개편 대상 선정 및 계획(안) 수립
2. 학부(과) 의견 수렴
3. 재학생, 교직원, 동문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
4. 교무위원회 심의
5. 대학평의원회 자문
6.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시행(학칙 개정 등)

제7조 (폐지 및 통합 학부(과)의 교원 및 학생) ① 학사구조개편에 따라 폐과가 결정된 학부(과)의 전임교원은 다른 학부(과)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.

② 폐지 또는 통합이 결정된 학부(과)의 재적생은 졸업 시까지 기존 학부(과)의 재적생으로 본다. 다만,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른 학부(과)로 전과를 허용할 수 있다.

③ 기타 세부사항은 학칙 및 내부 지침을 따른다.

제8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11월 2일 부터 시행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.